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25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김재원·강경숙·임오경

박은정ㆍ김준형ㆍ서왕진

차지호 • 이춘석 • 신장식

황운하 · 김윤덕 · 이해민

김선민 · 차규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 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

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것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지정문화유산의 허가와 관련된 교육)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 본문(제47조 및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중요성이나 보존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변경허

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허가기준) ① 국가유산청	제36조(허가기준) ①
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	
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81조의2(지정문화유산의 허가
	와 관련된 교육) ① 국가유산
	<u>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5</u>
	조제1항 본문(제47조 및 제74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허
	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
	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
	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의 중요성이나 보존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